

광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가단501035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고운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태영

변 론 종 결 2022. 1. 11.

판 결 선 고 2022. 2. 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위적 :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22.

접수 제2120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12. 5. 접수 제2217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22. 접수 제2120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12. 5. 접수 제2217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자동차 할부금융, 일반대출 등 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11. 12. 1.부터 2019. 12. 5.까지 원고의 광주지점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다. E은 2012. 1.경부터 2019. 10.경까지 원고의 광주지점에서 대출중개인(일명 ‘AG’)으로 활동하면서 자동차 관련 대출 상품, 리스 상품, 렌트 상품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9. 12.경 내부 감사를 거쳐, E이 자동차 구매 희망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선순위 고객에 대한 자동차 대금을 먼저 결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형태의 거래를 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E은 2020. 2. 6.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던 고객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 경우 최종 구매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게 되는데 E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E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매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거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자들 중 일부는 원고가 E의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다.

마. 한편 F은 2019. 8. 29. G과의 거래를 위해 개설된 가상계좌인 원고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리스계약 보증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D은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2019. 9. 18. I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I의 대출상환금으로 처리하였고, 원고는 2019. 11. 29. F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해 주었다.

바. D은 2019. 11. 22. 피고 B과, D 소유인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또한 D은 2019. 12. 1. 피고 C과, D 소유인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해 12.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12, 1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앞서 본 E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었는바,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하여 그에 따른 구상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그 액수는 위 E 관련 민사소송의 소가 합산액인 996,678,402원이다.

또한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리스계약 보증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제3자에게 송금하여 유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원고가 F에게 위 돈을 반환해 주었는바,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결국 원고는 D에 대하여 1,046,678,402원의 채권이 있고, 피고 B과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C와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모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원고의 피보전권리는 소송요건이라 할 것인데, 을 제2, 8,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에 대하여 앞서 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하여 구상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D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위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D에 대하여 앞서 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 별지목록1.

##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건물의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 ]  
 [ ] 아파트 [ ] 동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15층 [ ] 호 118.913㎡  
 대지권의표시 [ ]  
 토지의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 ]  
 대 36700.9㎡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36700.9분의 62.6758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표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년 11월 22일 접수제212090호로  
 등기한 을구 8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별지목록2.

##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건물의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 ] 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 ]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20층 [ ]호 84.9612㎡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 ]  
 대 28321.8㎡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28321.8분의 47.6197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표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년 12월 05일 접수제221739호로  
 등기한 갑구 9번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